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5일 조영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지역개발채권 매입(150만원 한도)을 감면하고,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지역과는 달리 채권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200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공채 매입 면제 대상(안 제8조 및 별표 2)

-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 단, 150만원까지만 면제함

### 나. 부칙

- 시행일 :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채권매입 면제 유효기간 : 별표2의 2. 사업·행위 타목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4. 검토의견

### 가. 개정개요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지역개발채권 매입(150만원 한도)을 감면하고, 기 시행중인 도시철도채권의 감면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지역과는 달리 채권감면을 받지 못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200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공채 매입 면제
  - [별표 2] 공채의 매입면제 대상 2. 사업·행위 란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등록을 추가.
  - 단, 150만원까지만 면제함
- 조례의 시행시기를 소급 적용함.
  -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소급적용함.

-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채권매입 면제 유효기간

- 부칙 제2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채권매입 면제 유효기간을 설정함.
- 별표2의 제2. 사업·행위 타목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종합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150만원 한도까지 면제하려는 것으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촉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현재 도시철도채권이 발행되는 지역에서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면제가 실시되고 있는바, 채권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적용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